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73

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 박성준 • 윤준병 • 노종면

박희승 · 허종식 · 백혜련

이정헌 • 박홍배 • 김성회

문진석 · 고민정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의 상한률을 5%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,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이 아닌 현행법 만의 해석으로 임대차계약 후 1년 만에 상한인 5%까지 임대료를 인 상하여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이 적용되므로, 1년 단 위 임대차계약이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, 임대료 인상도 2년 단위로 5%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한바 있음. 그러나 법 해석과 관련하여 혼동이 계속되고 있고, 현행법을 1년에 5%씩 2년 간 10%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상 임대차 보호기간이 일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현행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청구 제한 기간과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일치시키고, 2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조제3항 중 "1년"을 "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4조(임대료) ① • ② (생	제44조(임대료) ① • ②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	③		
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			
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	<u>2</u>		
<u>년</u>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.	<u>년</u>		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		